



◆ 본고는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reapork.or.kr) '양돈법률상담코너'에 게시된 질문과 답변을 정리한 것입니다. ... 편집자주 ◆



김태욱 변호사

양돈장 운영에 관한 문의

Q 처음 질문으로 제가 충청도에 있는 양돈장을 사서 운영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지요? 두 번째 질문으로 일반법인(주식회사)이 양돈장을 구매하려면 법인으로서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요? 농촌기본법 농업법인주식회사 정관에 보면 농업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일반인(법인)이 양돈업을 영위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A 1) 축산법에는 양돈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지역 주민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단지 축산업의 등록과 관련하여 결격사유(소정의 형사처벌자)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결격사유만 없다면 타 지역 주민이라도 양돈장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일반법인(주식회사)이 양돈장을 경영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서는 축산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다만 축산법 제21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출자총액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축산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기업집단이 아니라면 일반 법인도 양돈장을 경영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답변들은 일반적인 경우를 상정하여 검토한 것이고 양돈장 부지의 지목이 무엇인가 등 각각의 사안마다 발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대상 양돈장을 구매하기 전에 미리 관할 행정기관에 정식으로 질의하여 회신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차용금 변제에 관한 문의

Q 돈사 신축관계로 아는 사람에게 금전을 차용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약속 날짜를 어겼습니다. 기다리다가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지만 연락도 없고, 경찰에 나오지도 않아 만날 길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공소 시효가 있나요?(현재 수배중입니다.) 시효가 있다면 받을 수는 있는지요?

A 공소시효란 검사가 형사처벌을 위해 기소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데 사기죄의 경우 7년입니다. 또한 차용금 반환과 관련하여서는 공소시효가 아니라 민법상 소멸시효가 문제되는데 구체적인 경우를 보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으나 귀하의 경우 10년으로 보입니다. 즉 변제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소제기 등으로 차용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문의

Q 축사도 농어촌특별세 부과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A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201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목적세로서, '농어촌특별세'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 관세 등의 감면세액과 특별소비세, 취득세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0.15~30%의 세율로 과세하는 부가세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에 기술되어 있는데, 단순히 귀하께서 '축사'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서는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를 알 수가 없고, 귀하께서 소득세, 취득세, 관세 등을 감면받았는지 여부나 특별소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를 알아야 귀하가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라 하더라도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는 '농어민(양축기를 포함한다.)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과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축사를 소유하고 있는 귀하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의 농어민에 해당하여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농어민이나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으나, 이 규정 역시 귀하께서 '축사'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귀하께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현재 귀하의 소득세, 취득세, 특별소비세 등의 납세상황과 '축사'의 소유형태나 관리상황 등을 확인하신 후에 재정경제부의 조세지출예산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양돈**